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900호 2014년 11월 19일(수)

공 고

- 속초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..... 2
-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..... 3

회 람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기 획 감 사 실 (전화 : 639-2223, FAX : 639-2106)

속초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지정 공고

속초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속초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기 속초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금고지정 금융기관 : NH농협은행 속초시지부
- 금고의수 : 단일금고
- 약정기간 :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(4년)

2014년 11월 19일

속 초 시 장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1월 18일

속 초 시 장

1. 제 명 :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동결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처리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5항 별표 7
 -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“38,780원/톤”에서 “86,650원/톤”으로 개정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 (참조 : 환경위생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17-030 / 속초시 중앙로 183

속초시 환경위생과

(전화 : 033-639-2337, FAX : 033-639-2386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환경위생과(☎ 033-639-233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4. 11. .
제 출 자 : 속초시장

1. 제안이유

-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동결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처리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5항 별표 7
-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“38,780원/톤”에서 “86,650원/톤”으로 개정

3. 참고사항

- 가. 입법예고 예정(2014. 11. 18 ~ 12. 8)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1
- 다. 참고법령 발취 : 붙임 II
 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6조
- 라. 비용추계서 : 붙임 III
- 마.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: 붙임 IV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의 “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“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”를 “법 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【별표 7】

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

(제28조 제5항 관련)

구 분	처리비용
음식물류 폐기물	86,650원/톤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
<p>제28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)</p> <p>①시장이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해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생략</p> <p>⑤법 제5조의2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운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.</p> <p>【별표 7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제28조 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처리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음식물쓰레기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8,780원/톤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처리비용	음식물쓰레기	38,780원/톤	<p>제28조(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)</p> <p>①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 배출하는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경우 종량제 폐기물은 규격봉투가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~④생략</p> <p>⑤법 제6조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의 운영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.</p> <p>【별표 7】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제28조 제5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구 분</td> <td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처리비용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음식물류 폐기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86,650원/톤</td> </tr> </table>	구 분	처리비용	음식물류 폐기물	86,650원/톤
구 분	처리비용								
음식물쓰레기	38,780원/톤								
구 분	처리비용								
음식물류 폐기물	86,650원/톤								

관계 법령 발췌

□ 「폐기물관리법」

제6조(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) ①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은 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(이하 "반입수수료"라 한다)을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에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·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반입수수료의 금액은 징수기관이 국가이면 환경부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이면 조례로 정한다.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
- 관련조문 : 「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8조 제5항 별표7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「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」 제28조 제5항 별표7에 의거
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

나. 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15년)	2차년도 (2016년)	3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7년)
세 입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세외수입(200)	4,4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세 출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(701-02)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재원 조달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자체수입	소 계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	지방세					
	세외수입	4,202,525	840,505	840,505	840,505	840,505

다. 재원조달 방안 : 시비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속초시 환경위생과 생활환경관리담당 (이태열)	
연 락 처	☎ (033) 639-2744 FAX (033) 639-2386

붙임 IV

(강원도 속초시)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(조례)

자치법규명	속초항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
구분	제정() 개정(○)	
형식	조례(○) 규칙()	
소관 부서	부서장	부서명 : 속초시 환경위생과 성명/전화번호 : 이철수 (033-639-2340)
	담당자	부서명 : 속초시 환경위생과 성명/전화번호 : 이태열 (033-639-2744)
입법 일정 (예정)	관련부서 협의	2014. 10. 20 ~ 2014. 10. 30 (10일간)
	입법예고	2014. 11. 1 ~ 2014. 11. 21 (20일간)
	법제담당 심사	2014. 10. 20 ~ 2014. 10. 30 (10일간)
붙임 자료	1. 자치법규(안) (신·구 조문 비교표 포함)	

세부 항목		해당 여부	주요 내용
제외 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행정내부·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- 예) 조직, 기록물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치법규 - 예) 여성농어업인육성법,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	<input type="checkbox"/>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대상*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오	

* 2013년 알기 쉽게 정비할 계획인 자치법규로서 순수하게 표현만 정비할 계획인 경우

(강원도 속초시) 성별영향분석평가서(조례)

○ 제명 :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I. 개 요

□ 개정 목적

- 200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9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동결되어 공기업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공기업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음식물류 처리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속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8조 제5항 별표 7
 -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“38,780원/톤”에서 “86,650원/톤”으로 개정

II.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

분석평가 항목		해당 여부
1 성별 구분	1. 성별 구분 조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	2.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2 성별 고정관념	3.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	4.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3 성별 특성	5. 자격·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	6.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

1 성별 구분

1. 성별 구분 조항

<해당 조항>

○ 해당 없음

2. 성별 구분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

<필요성 및 분석 근거>

해당 없음

<해당 조항 개선안>

현행	개선안

2 성별 고정관념

3.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

<해당 조항>

해당 없음

4. 성별 고정관념 개선 조치 필요성 및 개선안

<필요성 및 분석 근거>

해당 없음

<해당 조항 개선안>

현행	개선안

3 성별 특성

5. 자격·요건 등 성별 특성 관련 조항

<해당 조항>

해당 없음

6.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

<필요성 및 분석 근거>

해당 없음

□ <해당 조항 개선안>

현행	개선안

기관/부서명	속초시청/ 속초시 환경위생과	
부서장	성 명 : 이철수	/직급 : 지방환경사무관
	전화번호 : 033-639-2340	
담당자	성 명 : 이태열	/직급: 지방행정주사
	전화번호 : 033-639-2744	